

제17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조 례 안 상 정
(조례 1건)

거 창 군 의 회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1 ~ 66
----------	-----------

발의연월일	2011. 10. 10.
발 의 자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 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을 연장하고, 서류제출 거부 및 선서거부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여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의회의 대 집행부 견제기능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연장 (안 제2조)

○ 감사기간 7일 이내 ⇒ 9일 이내

나. 행정사무감사·조사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을 확대함 (안 제9조제3항)

○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

⇒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를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5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그 밖에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 : 해당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7일”을 “9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을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감사)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u>7일</u> 이내로 실시되, 회의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야 한다.</p> <p>③ ~ ⑤ (생략)</p>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p> <p>① ~ ② (생략)</p> <p>③ <u>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u> <u>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u>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군수가 부과되, 과태료이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p> <p>④ ~ ⑤ (생략)</p>	<p>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9일</u> ----- ----- -----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p> <p>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u> <u>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u> <u>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u> <u>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u> ----- ----- -----.</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11.10.15] [법률 제10827호, 2011. 7. 14, 일부개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1.7.14>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